

보도일시	2020. 2. 6.(목) 석간(온라인 2. 6.(목) 12:00 이후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2020. 2. 5.(수) 11:00	담당부서	소프트웨어산업과
담당과장	박준국(044-202-6330)	담당자	이태호 사무관(044-202-6331)

『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』 발표

- '20. 2. 6(목),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보고 -

◆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(관계부처 합동)

□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혁신,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SW분야에 주 52 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SW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

※ 이번 대책은 작년 9월부터 SW기업, 개발자, 발주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(간담회 6회 개최 등) 및 과기정통부, 고용부, 기재부, 행안부, 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음

□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(SW개발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 부여)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(全數)관리하고,

※ '20년 공공SW사업(공공기관 수요예보) : 4조7,890억원(SW개발사업 1.2조)

- 1년 이상이 소요되는 SW개발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토록 하여 기업들이 시간부족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
○ (과업변경의 합리성 제고) SW사업 수행 중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·보급하고,

- 과업변경이 객관적·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법령을 개선하며,

※ 엄격한 위원자격 완화, 기업의 변경심의 요청시 과업변경심의위가 없으면 14일내 구성하여 심의, 처리기간 단축(30→14일), 입찰공고시 과업변경절차 명시 의무화

- 과업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, 사업기간 조정을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○ (SW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)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SW기업 밀집지역에 시범도입하고,

- SW표준계약서 도입 기업에 대해 공공SW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.

○ (SW수·발주자 협력 및 사업환경 개선) 주52시간 관련 수발주자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고,

- 공정계약·적정한 사업관리 등 SW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○ (불가피한 업무량 급증 대응) SW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 안내·자문, 대체인력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.

※ 특별연장근로제는 기존의 유연근로제(탄력·선택근로제 등) 활용 등 자구노력을 거친 후에 활용하고, 활용시 근로자 건강보호 고려가 필요함을 안내 예정

붙임 :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안대책(안) 주요내용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태호 사무관(☎ 044-202-63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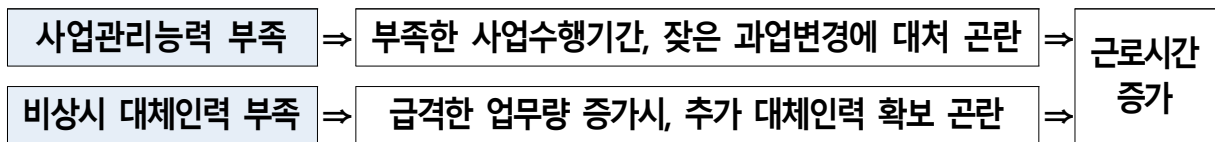
SW분야 근로시간 보완대책 주요 내용

1. 추진배경

□ 금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50~299인 중소SW기업(1,588개, 전체SW기업 중 8%)은 대기업(216개, 1.1%)과 달리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 호소*

* 주52시간 초과자 있는 50~299인 사업장 비율(고용부, '19.12) : 전체 15.6%
- 정보통신업(18.6%)은 제조(30%)·운수·창고(20%)에 이어 3번째로 높음

○ 이는 중소SW기업의 사업관리능력 부족, 대체인력 부족 등에 기인



□ SW기업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ICT시스템을 개발·관리하고 있어, 기업활동 위축시, 국가시스템 관리취약 및 경쟁력저하 우려

※ (관리취약) 산업시스템 장애 대응곤란, (경쟁력 저하) AI 등 IT혁신기술 확산 저하

○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SW분야 보완대책* 수립

※ '19.12.11일 『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』(관계부처 합동)에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 SW분야의 주52시간 정착에 필요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

2. SW분야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

① 사업수행기간 부족 및 불합리한 과업변경으로 업무량 증가

▶ 공공SW사업 조달요청 지연, 단년계약 과다로 사업수행기간 부족

관련사례 " 『주52시간 시대』 IT업계, 개발 사업 수행기간 부족 (한경매거진, '18.6.26) "

○ (조달요청 지연) 약 84%의 공공SW사업이 2분기 이후 입찰공고 되어 16%의 참여기업이 사업기간 부족 평가('18년 SW실태조사)

※ 조달요청~계약까지 3개월 이상 소요 ⇒ 2분기 입찰시 사업기간 3~6개월 수준

- (장기계속계약 활용 미흡) 사업기간 1년 이상 공공SW사업(27.4%) 중, 일부(10.4%) 만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여 사업기간 추가 확보기회 상실

▶ 공공SW사업 과업내용 불명확 등으로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 초래

관련사례 " IT사업 무리한 과업변경 요구,,,중소SW업체 줄도산 위기 (전자, '18.7.1) "

- (과업내용 불명확) 참여기업 27.3%가 과업변경 경험('18년 SW실태조사)
- (발주자 위주의 과업변경) 공공SW사업의 과업변경의 35.4%가 사업자 협의없이 발주기관에서 독자 결정('18년 SW실태조사)
- (과업변경 후속조치 미흡) 사업비·기간조정 등 후속조치 미흡
※ 과업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미조정 54.1% ('18년 SW실태조사)

2 SW종사자 보호 미흡 및 SW 사업환경 개선 필요

관련사례 - 하청피라미드에 묻힌 여성IT노동자(25세)의 죽음(경향, '18.10.26)

- (SW프리랜서 보호 미흡) SW프리랜서(약 2.6만명)는 주52시간 초과 근무 18.8%, 휴가사용곤란 49% 등 처우 열악('18년, SW정책연구소)
- (SW산업법 개정 지연) 공정경쟁·제값받기 등 SW업계의 숙원 사항을 담은 SW산업법 전부개정안('18년 국회제출) 처리 지연

3 불가피한 업무량 급증시에 대비한 특별연장근로제도 이해 부족

관련사례 "IT서비스·게임『주52시간, 수정·보완 필요』호소 (아이뉴스24, '18.12.3)"
-개발(3개월) 월평균 17.9시간, 테스트(1개월) 66.1시간 초과근무 발생,-

- (업무량 급증) SW분야는 SW개발 후 기존시스템 연계, 오류해결 등을 위한 Testing기간 동안 야근 등 업무량 급증(약 2~6개월)
- (특별연장근로 개정안 이해부족) 업무량 급증 등의 경우에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나('20.1월), SW업계 인지 부족

3. 중점 추진과제

〈 목표 및 추진전략 〉

- ◆ (목표) SW분야 주52시간제 안착으로 SW근로환경 및 산업경쟁력 제고
 - (추진전략 1) SW근로환경의 구조적 개선
 - ☞ 적정 사업기간 확보, 과업변경절차 개선, SW종사자 보호 등
 - (추진전략 2) 비상시 노동법 준수 안전판 마련
 - ☞ 개정 특별연장근로제도 안내·법률자문, 긴급한 대체인력 연계 지원 등

① 적정 사업기간 확보 및 과업변경절차 개선(대상 : 공공분야)

〈 공공 SW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 및 발주시기 조기관리 의무화 〉

- 차질없는 조달발주를 위해 SW개발사업 전수(全數)관리('20년 上, 고시개정)
 - 발주기관은 사업수행기간을 고려한 사업발주시기를 사업수행 전년(前年) 9월에 조기결정하고, 이에 맞춰 적기(適期)에 조달발주 추진
 - 발주기관은 사업정보(사업기간, 발주시기 등)를 시스템(www.swit.or.kr)에 등록
 - 과기정통부는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발주상황 상시점검(지연발주 방지)
- 1년 이상 사업의 장기계속계약 이용 지원
 - 과기정통부는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공공SW사업에 대해 장기계속계약방식 적용검토 요청 및 발주자 장기계속계약제도 교육('20년~)

〈 공공SW사업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〉

-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규정(SW진흥법 개정안 제49조) 마련('20년)
 - (현행) 공공SW사업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권고 ⇒ (개정안)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

- 現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관련 시행령 개정(법제처 심의중, '20.2월 예정)
 - SW진흥법 개정 전에도 現 과업변경심의위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
 - ① 구성요건 완화* ② 변경심의 요청시 위원회 구성 ③ 과업변경 이후에 구체적 후속조치** 의무화 추진
 - * (개정안) 4급 → 5급 이상 공무원, 10년 → 6년 이상 SW경력자로 완화
 - ** (1)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기간·금액변경 또는 (2)예산범위 내에서 과업재조정
- 불필요한 과업변경방지 가이드라인 마련(1분기) 및 발주업무지원(과기정통부)
 - 불필요한 과업변경은 방지하고, 적정한 과업변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
 - ※ (적정한 과업변경 사유 예시) 법령개정, 기술적 환경변화(예산절감 효과 필요) 등 (불필요한 과업변경 사유 예시) 제안요청서에 없는 추가기능 개발 요구 등
 - 제안요청서(RFP)에 작성 등 발주기관에 대한 발주기술지원(계속)
 - * 발주기술지원사업(과기정통부) : ('20년) 12.3억원 / 240개 기관 지원
- 부당한 과업변경 및 후속조치 미실시 신고창구 마련(SW협·단체 등)

② SW종사자 보호 및 SW사업 환경 개선(대상 : 공공·민간분야)

<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>

-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확정 및 시범도입 착수('20년 1분기~)
 - 서울고용노동청과 협력하여 SW기업이 밀집한 구로·금천지역(G밸리, 3,745개 SW기업 소재)부터 표준계약서 보급·활용 시범추진
- 시범도입 후, 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거쳐 보급지역 확대('21년~)
-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('20년 하)
 - ※ SW사업 기술성평가기준, SW사업 하도급 지침(과기정통부 고시)에 도입 추진

< SW 수발주자간 협력 강화 및 실태조사 실시 >

- 수발주자, 법조·노동전문가, 정부관계자 등으로 주52시간 관련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SW분야 수발주자 협의체 구성·운영('20.2월~)
※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확산 지원(합의사항 준수한 SW기업 우대 등)
- SW근로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SW분야 근로실태 조사연구('20년)

< SW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>

-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제출('18.11, 정부입법안) 및 상임위 논의 중으로 대국회 설명강화 추진 (민간 SW협·단체도 법안개정 자율적 노력 진행 중)

< SW사업 환경개선 관련 주요 내용 >

- 민간시장에도 공정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**공정계약의 원칙**(불공정한 계약내용* 무효화) 명시 및 **표준계약서 마련** 규정 신설(제37조)
* **과업내용 변경시 계약금액·기간 변경 불인정** 또는 상대방에게 전가 행위 등
- 발주자의 SW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**발주기술지원 근거** 신설(제41조)
- **사업기간 1년 초과시 장기계속계약 체결 의무화**(제44조) 등 다수 규정

③ 불가피한 업무량 급증에 대한 긴급 대응(대상 : 공공·민간분야)

- 과기정통부는 SW기업 대상으로 개정 특별연장근로제도 안내 및 상담 핫라인·자문(노무사 등) 실시('20.2월~)
※ (안내방향) 기존 유연근로제 우선활용 등 자구노력 후 활용, 근로자 건강보호 고려 등
- 특별연장근로 실시기업들이 필요하지만 쉽게 구하기 힘든 전문 인력 풀(테스팅 분야 전문가 등) 확보 및 기업 연결 지원('20년 상)

4. 향후 추진계획

- 관계기관별 추진과제 이행(2월~), 현장 이행실태 점검(반기별, 과기정통부)